

<h1>보도자료</h1> <p>2021. 10. 8.</p>		<h2>양형위원회</h2>
	문의	운영지원단장 송영복 (☎ 02-3480-1924)

양형위원회 10/8(금) 제112차 회의 결과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안 설정 범위 확대 및 유형 분류 심의
 - 설정 범위 확대: 현행 양형기준 설정 범위에 더하여,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 아동학대살해,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③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④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 아동매매, ⑤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의2호 음행강요·매개, 성적학대 등에 대하여 모두 양형기준 추가 설정하기로 함
 - 유형 분류 심의: 별도 ‘아동학대범죄군’을 신설하지는 않되, 현행 체포·감금·유기·학대 범죄 양형기준 내에서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고,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은 각 개별 양형기준에서 반영함

2.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 지난 회의에서 의결된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의 5가지 유형으로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을 모두 분류함
 - 무리한 합의 시도로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야기하는 경우를 가중처벌하기 위하여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겸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함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는 2021. 10. 8. 16:00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으로 제 112차 전체회의를 열어,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설정 범위, 유형 분류를 심의하고, ②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을 확정함

①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 (설정 범위, 유형 분류)

[설정 범위 관련 사항]

- 아동학대범죄는 형법 · 아동복지법 · 아동학대처벌법상 범죄를 기본범죄로 하여 구성되는데, 그 기본범죄 자체는 대부분 양형기준이 설정되어 있음
- 다만, 현행 양형기준의 설정 범위에 대하여 추가할 범죄는 다음과 같음
 - ① 아동학대처벌법 제4조 제1항(아동학대살해)
 - ②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 아동학대처벌법 제2조 제4호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 상습범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 ③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
 - 아동학대처벌법 가목(상해 등), 라목(협박 등), 바목(강간 등), 사목(명예훼손 등), 아목(주거·신체수색), 차목(공갈 등), 카목(재물손괴) 등에서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의 범행에 대한 가중 규정을 설정 범위에 포함할 필요 있음
 - ④ 아동복지법 제71조 제1항 제1호(아동매매), 제1의2호(음행강요·매개, 성적 학대)

[유형 분류 관련 사항]

- 별도 ‘아동학대범죄군’은 신설하지 않되, 아동학대범죄의 주요 구성요건은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아동학대’ 대유형을 신설하여 그 안에서 중 유형, 소유형을 둬. 상습범 가중처벌,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 가중처벌

등은 각각의 행위태양을 규정하는 양형기준에서 양형인자 등으로 반영

- 아동학대범죄를 구성하는 기본범죄들을 모두 별도의 ‘아동학대범죄군’으로 포섭할 경우, 위 기본범죄들에 대한 현행 양형기준 및 유형분류의 수만큼 범죄유형이 과생되는 등 양형기준을 설정하기에 매우 어려움
- 현행 양형기준의 각 범죄군 내에서, 아동학대범죄의 특수성을 고려한 적용 대상의 추가, 양형인자의 신설 또는 수정, 권고 형량범위의 조정 등을 통해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합리적인 양형기준이 제시되도록 함이 타당함
 - ☞ 개별적인 범죄군 양형기준에서 규정한 아동학대처벌법 제6조(상습범), 아동학대처벌법 제7조(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등에 대한 가중처벌)가 누락된 범죄군은, 해당 범죄군(폭력범죄, 성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수정으로 반영함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군 중 ‘아동학대’ 부분 세부 유형 변경은 다음과 같음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대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현행 양형기준	수정 양형기준
01. 체포·감금	01. 체포·감금
02. 유기·학대	02. 유기·학대
03.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03. 아동학대

○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양형기준 중 아동학대 관련 중유형, 소유형 분류를 다음과 같이 변경: 특히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중유형을 신설하고, 보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한 아동매매, 성적 학대를 다른 학대 유형과 구분함

현행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 처벌법상 아동학대중상해·치사	수정 양형기준 중 03. 아동학대
< 신 설 >	가.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
	1. 매매, 성적학대
	2. 신체적·정서적 학대, 유

<p>(중유형 없음) (소유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p style="text-align: center;">기·방임 등</p> <p>나. 아동학대처벌법상 아동학 대중상해·치사·살해</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아동학대중상해 2. 아동학대치사 3. 아동학대살해
---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관련 향후 일정]

- 2021. 12.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권고 형량범위 심의
- 2022. 1.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중 양형인자, 집행유예 기준 심의 /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공개
- 2022. 1.~2022. 2.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기관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2022. 2.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공청회 개최
- 2022. 3.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공청회에서 제출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 의결

②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구체적인 양형기준 수정안 확정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과 범죄군 분류]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 원칙
 - 범죄군별로 다소 일관되지 않았던 다양한 합의 관련 양형요소(처벌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상당 금액 공탁, 일부 피해 회복 등)를 보호법익을 기준으로 다음 표와 같이 정비

구분	보호법익	특별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	일반감경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
1-1	개인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1-2		처벌불원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1	개인 및 국가·사회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2-2		-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3	국가·사회	-	-

○ 상세 설명

-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 범죄로 인한 피해회복이라는 형사정책적 목적의 달성, 비교법적 검토 결과 등을 종합할 때, **개인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의 경우 피해자의 처벌의사 또는 피해 회복 여부를 양형에 적극적으로 반영함이 타당함. 따라서 처벌불원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하고, 범죄군 특성에 따라 ①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을 처벌불원에 준한다고 평가할 수 있는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이를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② 그렇지 않은 범죄군 양형기준에서는 처벌불원만을 특별감경인자(집행유예 주요 긍정적 참작사유)로 각 반영. 한편, 이에 미치지 못하는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은 일반감경인자(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반영
- **개인적 법익과 국가·사회적 법익 모두가 보호법익인 사건**에서는 각 범

죄군의 특성에 따라 ① 개인적 법익에 대한 범죄와 동일하게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규정하거나, ②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만을 일반감정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 긍정적 참작사유로 규정

- **국가·사회적 법익이 보호법익인 사건**은 피해자 의사에 따라 가벌성의 정도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합의 관련 양형요소를 특별감정인자는 물론 일반감정인자로도 반영하지 않음

○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현행 44개 범죄군 양형기준 분류 결정

구분	범죄군
1-1	살인 / 강도 / 횡령·배임 / 약취·유인·인신매매 / 사기 / 절도 / 지식재산권 / 폭력 / 교통 / 공갈 / 체포·감금·유기·학대 / 장물 / 권리행사방해 / 업무방해 (1유형) / 손괴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1유형) / 명예훼손 / 주거침입 / 배임수증재
1-2	성범죄 / 성매매 (1-가 유형) / 디지털 성범죄 (2, 3, 4, 5유형)
2-1	선거 (3유형) / 방화 / 업무방해 (2유형) / 근로기준법 위반 / 과실치사상·산업안전보건 (2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2, 3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2유형) /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2-2	식품·보건 (2, 3유형) / 성매매 (2-나 유형) / 도주·범인은닉 (1-2유형) / 디지털 성범죄 (1유형) / 위증 / 무고 / 공무집행방해
3	뇌물 / 공문서 / 사문서 / 식품·보건 (1유형) / 마약 / 증권·금융 / 선거 (1, 2, 4유형) / 조세 / 변호사법 위반 / 성매매 (나머지 유형) / 사행성·게임물 / 석유사업법 위반 / 도주·범인은닉 (나머지 유형) / 통화·유가증권·부정수표단속법 위반 (1유형) / 대부업법·채권추심법 위반 (1유형)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환경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를 일반가중인자 검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추가]

- 현행 양형기준에서는 일부 범죄에만 들어가 있던 일반가중사유 또는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인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 관련 요소를,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로 명칭을 통일하고, 그 정의 규정도 정비하여 피해자가 있는 범죄(1-1, 1-2, 2-1, 2-2 범죄군)에서 일괄적으로 일반가중인자이자 집행유예 일반부정사유로 설정
 - 무리한 합의 시도로 2차 피해를 가중하는 것을 막기 위함
- 수정된 「합의 시도 중 피해 야기(강요죄 등 다른 범죄가 성립하는 경우는 제외)」의 정의 규정

합의를 시도하는 과정에서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괴롭히거나, 범행 사실을 공개하거나 공개할 의사를 표명하여 압력을 가하거나, 기타 **합의거절에 대한 유형·무형의 불이익을 암시하는 등 부당한 압력을 가하거나**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강요한 **피해를 일으킨** 경우를 의미한다.

[정의 규정]

- **처벌불원**
 - 정의 규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에 대하여 진심으로 뉘우치고, 피해자나 유족(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이 처벌불원의 법적·사회적 의미를 정확히 인식하면서 이를 받아들여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를 의미한다.

① 피고인 측의 사실상의 강요 또는 기망에 의한 처벌불원 등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지 않은 처벌불원의 의사표시를 한 경우나,

② 피해자나 법정대리인의 처벌불원의사에 통상적으로 납득할 만한 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포함하지 않는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의 나이, 지능 및 지적 수준에 비추어 처벌불원의 의사표시가 가지는 의미, 내용, 효과를 이해하고 알아차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 및 그러한 의사표시가 진실한 것인지 여부를 세밀하고 신중하게 조사, 판단한 결과 이에 해당되는 경우만을 포함한다.

- ① 가해자 태도 요소로서 '진지한 반성'을 요구하고, ② 피해자 의사 요소로서 양형심리를 통하여 피해자 측이 처벌불원의 의미를 이해하고 진정으로 피고인의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이 객관적으로 확인될 것을 요구함
- 다만 아래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처벌불원'의 정의 규정에 피해 보상에 관한 내용은 따로 반영하지 않음
 -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특별감경의 대상에서 제외할 경우 자칫 피고인의 경제력이 양형을 좌우하는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비재산범죄의 경우 경제적 보상을 처벌불원의 요건으로 둘 만한 논리적 정합성이 없음
 -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이를 피해자가 받아들여 진심으로 용서하는 것 자체가 「회복적 사법」의 핵심

○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

- 정의 규정

피고인이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끝에 합의에 준할 정도(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의 약 2/3 이상)로 피해를 회복시키거나 그 정도의 피해 회복이 확실시되는 경우를 의미한다.

- 중전 양형인자 중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상당 부분 피해 회

복된 경우」를 통합하여 정의 규정을 신설함

- 핵심 요소로서 ①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② 합의에 준할 정도의 피해 회복 또는 그 확실시를 정하되, 종전 재산범죄에서 상당 부분 피해 회복의 기준으로 삼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은 재산적 피해만 발생한 경우에 적용할 수 있음을 명시함으로써 예측가능성을 높임
- 정의 규정에서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을 요구함으로써 피고인의 반성·뇌우침이나 합의 노력 없는 공탁 등 단순히 경제적 보상만 이루어진 경우에는 ‘실질적 피해 회복(공탁 포함)’에 해당하지 않도록 그 적용 범위를 제한함

- 선거범죄, 명예훼손범죄 양형기준에서는 범죄의 특수성 감안하여 정의 규정 추가
 - 선거범죄: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보도를 정정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만, 시정조치가 선거일 직전에 이루어져 사실상 피해 회복이 어려운 경우를 제외한다.”
 - 명예훼손범죄: “피고인이 자발적 의사로 발언을 취소하거나 게시물을 삭제하거나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등 시정조치를 취함으로써 피해자의 명예가 실질적으로 회복된 경우를 포함한다.”

○ **상당한 피해 회복(공탁 포함)**

- 다음 이유로 정의 규정을 두지 않음
 - ① 처벌불원 또는 실질적 피해 회복에는 못 미치되, ② 양형에서 유의미하게 고려할 만한 수준의 피해 회복을 핵심요소로 하는데, 이와 같은 기준을 다양한 범죄에 걸쳐 일관되게 정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움
 - 설령 정의 규정을 두더라도, 추상적인 기준의 선언에 그칠 수밖에 없기에 그 실효성이 크게 떨어짐

- 해당 인자의 판단 기준은 결국 사회통념상 피해 회복의 「상당성」이므로, 불완전한 정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는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양형 재량권 행사를 통하여 그 해당 여부를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안 의결 시기]

- 제8기 양형위원회 임기동안 양형기준을 수정하기로 한 아동학대범죄, 성범죄, 교통범죄 각 양형기준은, 해당 범죄군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을 수정하면서 함께 수정할 필요가 있는 체포·감금·유기·학대범죄, 폭력범죄, 명예훼손범죄, 주거침입범죄, 공갈범죄, 손괴범죄 양형기준 역시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 시 위 논의 사항(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을 반영하여 한꺼번에 수정하기로 함

[합의 관련 양형요소 정비에 따른 양형기준 수정 관련 향후 일정]

- 2021. 10.~2021. 11. 국가기관, 연구기관, 유관기관, 시민단체 등 관계 기관에 대한 양형기준 수정안 의견조회 / 양형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행정예고 및 의견 수렴
- 2021. 12. 양형위원회 전체회의 개최
 -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관계기관 의견조회, 행정예고에 대한 의견 검토
 - 양형기준 최종 의결

[3] 다음 양형위원회 회의

- 일시 : 2021. 12. 6.(월) 오후
- 장소 및 방식: 대법원 회의실 대면 회의 또는 비대면 화상회의 방식
- 안건: 합의 관련 양형인자 정비에 따른 수정 양형기준 최종 의결
아동학대범죄 양형기준 수정안 심의(권고 형량범위)
벌금형 양형기준 원칙 심의